



# 성북구



수신자    내부결재  
(경유)

제목    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시행변경인가 공람·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(2006.10.19.)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11(2008.04.03.)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31호(2011.08.11.),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69호(2012.06.28.), 서울특별시고시제2013-10호(2013.01.17.)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3-65호(2013.06.20.)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고시제2014-327호(2014.09.25.)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입니다.

2. 『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』 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서가 제출되어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하고자 합니다.

### 가. 사업개요

- 1) 사업명칭 : 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위    치 : 성북구 장위동 62-1번지 일대 (사행면적 : 153,501㎡)
- 3) 시 행 자 : 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- 4)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
- 5) 건축계획 : 지하3층/지상31층, 31개동, 공동주택(아파트) 2,840세대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및 부대복리시설

### 나. 주민공람·공고 개요

- 1) 공람기간 : 2014.12.04. ~ 2014.12.18.(15일간)
- 2) 공람장소
  - 가)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2241-2833)
  - 나) 장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909-3161)
- 3) 공람내용 : 사업시행변경인가 관계도서

